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철도여객 안전 확보 및 현장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7급 8명, 8급 7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증원하고, 신공항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시행)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신설 사무를 규정하는 등 교통물류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현행화 하고, 주택토지실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현행화 하며, 국토관리사무소 보수와 및 구조물과의 명칭을 실제 추진업무에 맞게 변경하고, 벤처형조직인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정원 2명(9급 2명)을 임기제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공공주택총괄과·공공주택지원과”를 “주거복지지원과·공공주택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제15항 및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총괄과장”을 “공공주택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2. 긴급지원주택 등 재해주택지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6.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및 대기자 제도 관련 사항
- 7.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8.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을 포함한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다)
9. 공공주택 재고관리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10.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21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3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스마트 국토 엑스포(Smart Geospatial Expo)의 개최·홍보
제11조제10항에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허가, 면허, 등록에 관한 사항
2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운임, 요금 등 신고에 관한 사항
25.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5항에 제16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결함 있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 부품제작자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18. 대체부품 인증 제도 운영 및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 시정조치를 감응하여 시행하는 경제적 보상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

발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및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 안전·하차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 본문 중 “보수과 및 구조물과”를 “도로안전운영과 및 시설안전관리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수과·구조물과”를 “도로안전운영과·시설안전관리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보수과장·구조물과장”을 “도로안전운영과장·시설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과장”을 “도로안전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물과장”을 “시설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1명(4급 또는 5급 1명),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484”를 “5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84”를 “503”으로 하며, 철도경찰주사보 “153”을 “161”로, 철도경찰서기 “188”을 “195”로, 철도경찰서기보 “58”을 “61”로 하고, 철도경찰서기보·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서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탐지견관리담당) 1”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교통부 한시조직에 두는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18의 2를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건설교통부령 제569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이후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으로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1명(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으로 본다.

별표 11의2 중 총계 “484”를 “5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84”를 “503”으로 하며, 철도경찰주사보 “151”을 “159”로, 철도경찰서기 “188”을 “195”로, 철도경찰서기보 “58”을 “61”로 하고, 철도경찰서기보·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서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탐지견관리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18 제1호중 “2021년 6월 30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6”을 각각 “3”으로 하며, “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고,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며, “시설주사 1”을 삭제한다.

별표 1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8명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2022년 3월 31일까지
2)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10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2022년 3월 31일까지
3)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3명 (5급 1명, 6급 2명)	2023년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령 제64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중 “2021년 7월 30일”을 “2022년 4월 30일”로 하고, “2021년 8월 1일”을 “2022년 5월 1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8의2]

국토교통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3제2항 관련)

1. 신공항기획과(존속기한: 2022년 6월 30일)

총계	6
일반직 계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1
항공주사	1
시설주사	1

2.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존속기한: 2023년 3월 31일)

총계	19
일반직 계	18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6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	

5

1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⑥ (생략)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주택토지실에 주택정책과 · 주택기금과 ·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정비과 · 주택임대차지원팀 · 주거복지정책과 · <u>공공주택총괄과</u> · 공공주택지원과 · 민간임대정책과 · 토지정책과 · 부동산산업과 · 부동산평가과 · 부동산개발정책과 · 국토정보정책과 · 공간정보제도과 · 공간정보진흥과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 ----- <u>주거복지지 원과</u> · 공공주택정책과 ----- ----- ----- ----- ----- ----- ----- ----- ----- -----			
⑧ ~ ⑬ (생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u>⑭ 공공주택총괄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⑮ 공공주택정책과</u> 장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⑮ 공공주택지원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⑯ 주거복지지원과</u> 장 ----- -----,			
1. 매입 · 전세임대주택 공급 및	1.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및 대기자 제도 관련 사항 3.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5. 긴급지원주택 등 재해주택지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을 포함한다)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운 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입 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 항 9. 공공주택 재고관리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관 한 사항 10.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에 관 한 사항	층의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 항 2. 긴급지원주택 등 재해주택지 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 한 사항 3.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에 관 한 사항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운 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입 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 항 6.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및 대기자 제도 관련 사항 7.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을 포함한다) 9. 공공주택 재고관리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관 한 사항 10.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

<21> 국토정보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12. <u>스마트 국토 엑스포(Smart Geospatial Expo)의 개최·홍 보</u> 13. ~ 21. (생 략) (생 략) <23> 공간정보진흥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 략) <u><신 설></u> 제11조(교통물류실) ① ~ ⑨ (생 략) ⑩ <u>모빌리티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u> 1. ~ 21. (생 략) <u><신 설></u> <u><신 설></u>	-----. 1. ~ 11. (현행과 같음) <u><삭 제></u> 13. ~ 2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1. ~ 19. (현행과 같음) 20. <u>스마트 국토 엑스포(Smart Geospatial Expo)의 개최·홍 보</u> 제11조(교통물류실) ① ~ ⑨ (현 행과 같음) ⑩ -----. 1. ~ 21. (현행과 같음) 22. <u>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에 관한 사항</u> 23. <u>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 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 개사업의 허가, 면허, 등록에</u>
--	---

신·구정원대비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484</u>	<u>503</u>	+19
일반직 계	<u>484</u>	<u>503</u>	+19
·	·	·	
·	·	·	
철도경찰주사보	<u>153</u>	<u>161</u>	+8
·	·	·	
·	·	·	
철도경찰서기	<u>188</u>	<u>195</u>	+7
·	·	·	
·	·	·	
철도경찰서기보	<u>58</u>	<u>61</u>	+3
·	·	·	
·	·	·	
<u>전 문 경 력 관</u>	<u><신 설></u>	<u>1</u>	+1
다군(탐지견관리담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의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484</u>	<u>503</u>	+19
일반직 계	<u>484</u>	<u>503</u>	+19
·	·	·	
·	·	·	
철도경찰주사보	<u>151</u>	<u>159</u>	+8
·	·	·	
·	·	·	
철도경찰서기	<u>188</u>	<u>195</u>	+7
·	·	·	
·	·	·	
철도경찰서기보	<u>58</u>	<u>61</u>	+3
·	·	·	
·	·	·	
<u>전 문 경 력 관</u>	<u><신 설></u>	<u>1</u>	+1
다군(탐지견관리담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국토교통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3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신공항기획과(존속기한: 2022년 6월 30일)	<u>1. 신공항 기획과(존속기한: 2021년 6월 30일)</u>	<u>1. 신공항 기획과(존속기한: 2022년 6월 30일)</u>	
총계	<u>6</u>	<u>3</u>	-3
일반직 계	<u>6</u>	<u>3</u>	-3
·	·	·	
<u>기술서기관</u> 또는 <u>시설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u>시설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u>시설주사</u>	<u>1</u>	<u><삭 제></u>	-1
·	·	·	
·	·	·	